

2021년도 제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 25.(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6호)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00건(안전번호 제2021-8498호~9531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8498호는 시정권고보다는 권리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1-8499호는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인에게 불법복제물을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8500호는 공정이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해당 영상 저작물의 합법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1-8501호~8503호는 게시자에 의하여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9531호는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것으로 부결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69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0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회의록에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음. 제2호 안건 비공개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제2호 안건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이 타당함.
- C 위원, D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인 7쪽~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4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70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1-8498호~9531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 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8498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음악교육 전문 사이트에서 바이올린 연주법 강의 영상과 함께 국내 대중음악 한 곡 전체의 악보를 제공한 사안임.

보호원 직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송1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이트를 운영중인 '☆☆☆☆☆☆☆☆'는 사용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악보의 경우 원곡이 아닌, 자체적으로 편곡 등을 하여 악보를 제작하였더라도 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임.

악보에 판매처 등이 마킹되어 있지 않고 기보자·편곡자 등에 대한 정보가 없음. 게시자에 대한 정보도 없으나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게시글 작성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강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악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업로드한 것으로 보임.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해당 곡 악보는 500원에 판매되고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849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B 위원: 다른 악보도 제공하고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른 강좌 영상물을 제시하면서)다른 강좌에서도 저작자만 표시된 악보를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악보는 아닌 것으로 보임. 바이올린 교육용으로 직접 채보한 것으로 보임.

- D 위원: 학교 수업이 아니어서 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사이트에는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해당 강의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90일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음. 또한 강의 영상 자체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직접 무료 수강이 가능함.

- C 위원: 음악 선생님이 홍보를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며 악보를 함께 제공하여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음. 심의위원회는 원곡 그대로를 제공한 경우 시정권고를 하였고, 편곡을 하여 2차적저작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간 해결하도록 하였음.
- D 위원: 행정제재를 하기에는 위법상태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공정이용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직접 연주 및 교육 목적 등 한정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공정이용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다고 보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음.
- B 위원: 권리자가 신고한 사안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렇지 않음. 권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신고한 사안임.
- B 위원: 공정이용으로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사안이라고 생각됨.
- C 위원: 그러함.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고 볼 수도 없음. 2차적저작물에 포커스를 두는 것은 어떠한지? 합법 시장에서 제공하는 악보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편곡되어 있음.
- B 위원: 2차적저작물이지만 악보 전체를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2차적저작물의 작성 또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임.
- D 위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A 위원: 같은 생각임. 2차적저작물로 판단되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C 위원: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전송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거나 대규모·반복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시정권고에는 부결 의견임.
- D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보다는 권리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2차적저작물로서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시정권고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 의견임.
- B 위원: 2차적저작물로서 권리자의 사용허락이 필요한 사안이긴 하나 대규모 급속한 전파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는 등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498호는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8499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중고거래 사이

- A 위원: 심의위원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에게 반복하여 동일 저작물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법복제물의 전송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메일을 통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여 영리를 취하려는 목적의 게시물로, 게시자와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 불법복제물이 전송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B 위원: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인에게 불법복제물을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D 위원: 같은 생각임.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49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8500호는 일본 드라마 말미의 2분 59초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제공 부분은 드라마의 엔딩곡 부분에 해당함.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엔딩 크레딧을 확인할 수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8504호~8510호는 블로그 운영자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한화 전체 분량을, 안건번호 제2021-8511호는 ■■■■■ 이용자가 우리나라 드라마의 36분 38초 분량을 각각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8512호~953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애비규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8531호는 2020. 11. 12.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 ‘애비규환’을 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밴드명은 ‘△△△△△△△△△△△△△△’이고 공개형 밴드로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고, 밴드 소개와 게시글을 볼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작물은 현재까지 상영중이며 2020. 12. 10. 극장 동시 VOD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합법 시장에서 4,500원에 대여, 9,900원에 구매할 수 있음.

(방송 ‘위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8833호는 2019. 12. 20.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미국드라마 ‘위쳐’임. 웹하드에서 시즌1 8부작 전편을 570포인트에 판매 중임.

(게임 ‘더 위쳐 2: 왕들의 암살자 The Witcher 2: Assassins of Kings’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9344호는 안건번호 제2021-8833호에서 제공하는 저작물과 동일한 원작으로 제작

된 게임물임. 2011. 5. 17. 출시되었고 합법 시장에서 21,000원에 구매할 수 있음. 웹하드에서는 1,140포인트에 판매 중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8504호~953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8504호~953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953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

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953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안전번호 제2021-9530호와 동일한 게시물임을 확인하였고, 부결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9531호는 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498호, 8500호, 9531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8501호~8503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8499호 및 제2021-8504호~953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3.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2. 1.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